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2018. 9. 1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가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제도 도입 초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17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현재는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위해 모든 국무위원과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총 63개 직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확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막중한 역할과 책임성을 감안해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개정).

아무쪼록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